

의안번호	2219003
의 퇴 인	최혁진 의원
회 답 일	2026.8.11.
추 계 번호	26B2637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이를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1억 8,800만원, 2031년에 5억 7,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억 2,400만원(연평균 8억 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70	—	—	—	—	70	1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561	561	561	561	561	2,805	561
실태조사(안 제7조)	545	—	—	545	—	1,089	218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합 계	1,188	573	573	1,118	573	4,024	805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 6.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실태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1.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조사, 동료 상담 및 자조 모임 지원 등 2.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공연, 전시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 3. 장애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 장애 이해 증진 캠페인 등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참여자의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를 선정할 때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자의 선정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참여자의 권익 보호)	참여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의무규정
		누구든지 참여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의무규정
		참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2조(근로조건의 보장)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3조(근로지원인의 배치)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치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치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14조(교육훈련)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15조(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3	안 제16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18조(벌칙)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발생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규모와 이들에게 지급될 임금 및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안 제7조(실태조사)		
5	안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		

1) 자료: 서울특별시

2) 자료: 경기도

3)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조(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안 제9조),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 – 또한, 장래에 발생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 내로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제정안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제정안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안에 규정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으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변경 및 시행 여부와 규모·내용과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기 곤란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규모,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15조(재정 지원)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이후부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2026년 예산 기준 62억원, 시비 100%)을 통해 참여자 및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기관부담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¹⁾ ※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2026년 기준 126억원, 도비 100%)을 통해 참여자와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²⁾
7	안 제10조(참여자의 선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선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은 참여자의 선정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동 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11조(참여자의 권익 보호)	—	• 미대상 – 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자 구제 업무는 현재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2조(근로조건의 보장)	—	• 미대상 – 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명시적 규정으로 동 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3조(근로지원인의 배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³⁾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배치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70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추진 중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기존 사업의 확대 및 변경 여부와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코드: 1452-306)의 내역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4조(교육훈련)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16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평가 대상 및 방법과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을 검토하기 곤란하므로 이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재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 대가 지급 등에 따른 추가제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18조(벌칙)	—	• 미대상 － 제정안의 시행으로 벌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4)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⁵⁾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산
 -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⁶⁾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평가 및 제6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발주한 연구용역(2022년 기준 7,000만원/회)을 토대로 산출

5)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
6.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2]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70	—	—	—	—	7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산
 - － 이때, 용역단가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3,3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와 16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비용(A)	33	33	33	33	33	165
고용노동부 포함 지방자치단체 수(B, 개)	17	17	17	17	17	—
소계(C=A×B)	561	561	561	561	561	2,80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실태조사(안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 첫해인 2027년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7)에 따라 4종의 국가승인 통계조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실태조사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산출
-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①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주변 제반요인을 매년 조사하는 횡단면 조사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용역예산: 2025년 기준 3.16억원/회

②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장애인 취업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용역예산: 2025년 기준 5.9억원/회

③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고용 및 미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7)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조사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용역예산: 2025년 기준 5.94억원/회

④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용역예산: 2025년 기준 6.78억원/회

[표 5]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실태조사(안 제7조)	545	—	—	545	—	1,089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안 제8조)

□ 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⁸⁾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산출하기 곤란
 - 다만, 고용에 관한 국가의 주요 시책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고용정책심의회⁹⁾의 분과회의 중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성격을

8) 제정안의 시행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

고려하여 이를 준용하여 산출

- (민간위원 수) 2025년 기준 고용정책심의회의 민간위원 규모를 준용하여 20인으로 가정하여 산출
- (회의 개최 횟수) 2025년 고용정책심의회 분과회의 중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출석 횟수를 고려하여 반기별로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⁰⁾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회의 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회의 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소계(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 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이를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0억 2,400만원(연평균 8억 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10)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70	—	—	—	—	70	1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6조)	561	561	561	561	561	2,805	561
실태조사(안 제7조)	545	—	—	545	—	1,089	218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 (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합 계	1,188	573	573	1,118	573	4,024	80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
 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서울 소재의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직무 및 근무처 발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구 분	권리중심 일자리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기간	• '20년 7월 ~ '23년 • 연 단위 사업으로, 매년 보조사업자 신규 선정	• '24년~ 계속 • 연 단위 사업으로, 매년 보조사업자 신규 선정
일자리 수	• 400개	• 388개
근로조건	• 시간제 200개(주20시간) • 복지형 200개(주15시간) ※ 최저임금 적용	• 특화일자리 유형 280개(주20시간) • 문화예술일자리 유형 108개(주20시간) ※ 최저임금 적용
사업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최종증 우선 참여 보장	•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중증 우선 참여 우대 * 단, 문화예술일자리는 최종증 장애인만 참여 가능
소요예산	• 5,803백만원('23년 기준)	• 6,171백만원('26년 기준)
지원사항	• 참여자 및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 4대 보험료, 기타운영비	
직 무	• 온라인콘텐츠, 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문화예술 등 * 3개년('20~'22년) 권리중심 일자리 직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23.3월 시행) : 시위·캠페인 50.4% > 전시·토론회 17.2% > 모니터링 15.4% 順	• 단순 사무보조부터 IT·바이오 등 민간고용 시장 변화를 반영한 직무까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제공 • 민간 연계 취업으로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직무 개편 * '24년 이후 최소 56명 민간 연계 취업완료
근 무 처	• 보조사업자 기관 내 자체 배치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다양화 • 도서관·보건소·민간기업 등으로 근무처 확대 * 자체 배치 금지
예산과목	•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행기관	• 25개소 ※ 기관당 전담인력 1명 지원	• 23개소 - 특화유형 14개소, 문화예술유형 9개소 ※ 기관당 전담인력 1~2명 지원

[참고자료 2]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

(경기도 제출자료)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정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일자리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란?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 기관당 참여자 10명
지원내용	• 보조금: 참여자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원 - 인건비(참여자·전담인력 보수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사업내용	• 심한 정도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특화직무 활동 • 직무 수행을 위한 참여자 고용 • 지역사회 연계 직무 활동 수행
직 무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활동
전담인력	• 참여자 10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참여가능 장애인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 무 처	•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 • 지역 내 시설, 공간 등 인프라 활용 가능